

15.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 16.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
 17.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
 18.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
 - 18의2.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·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
 - 18의3.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·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
 19.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 20. 삭제 <2015. 6. 22.>
 21. 삭제 <2015. 6. 22.>
 - 21의2.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
 22.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23.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 - 23의2.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
 - 23의3.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 24.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 25.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
 26.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27.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11. 6. 15., 2013. 3. 23.>
- ④ 삭제 <2011. 6. 15.>
- ⑤ 삭제 <2011. 6. 15.>
- [법률 제21025호(2025. 8. 14.)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- [시행일: 2026. 1. 1.] 제70조

제71조(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)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, 제23조제1항,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,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(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4. 3. 18.>

부칙 <제21025호, 2025. 8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2호·제13호,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,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,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,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9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